

1
제 1 장

시작하기에
앞서





1.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 1.1 1975년 산업조정법
- 1.2 산업프로젝트의 승인 지침

2. 말레이시아의 사업체 등록

- 2.1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
 - 2.1.1 회사 구조
 - 2.1.2 유한주식회사
- 2.2 회사 설립 절차
 - 2.2.1 현지 법인 요건
- 2.3 외국 회사의 등록
 - 2.3.1 등록 절차
- 2.4 유한책임파트너회사(LLP) 구조
 - 2.4.1 LLP의 특징
 - 2.4.2 LLP는 누구로 구성될 수 있는가?
 - 2.4.3 등록 절차
 - 2.4.4 LLP로의 전환
 - 2.4.5 LLP의 요건
- 2.5 E-서비스

3. 지분 정책에 관한 지침

- 3.1 제조 부문의 지분 정책
- 3.2 외국 투자의 보호



시작에 앞서

1. 제조 프로젝트의 승인

1.1 1975년 산업조정법(Industrial Coordination Act 1975, ICA)

말레이시아 제조부문의 체계적인 발전과 성장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목적으로 1975년 산업조정법(ICA)이 도입되었습니다.

산업조정법(ICA)에 따르면, 자본금이 RM250만 이상이거나 또는 유급 상근 근로자를 75명 이상 고용한 제조업체는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여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조업 허가 신청서는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 산하 정부 기관으로서 말레이시아 산업 발전의 촉진과 조정을 담당하는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ICA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제조활동”(Manufacturing activity)이라 함은 물품이나 물질의 사용, 판매, 운송, 배송 또는 폐기 등과 관련하여 그 물품이나 물질을 생산, 변경, 혼합, 장식, 마무리처리 또는 여타 방식으로 처리 및 개조하는 활동을 말하며, 이에는 부품 조립과 선박 수리도 포함되긴 하나, 통상적으로 도소매업 관련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자본금”(Shareholders’ funds)이라 함은 회사의 납입 자본금(paid-up capital), 적립금(reserves), 손익처분 계정 (profit and loss appropriation account)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관련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은 우선주(preference share)와 보통주(ordinary share)를 말합니다. 단,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으로 발행한 보너스 주식 관련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적립금(reserves)이란 고정자산 재평가에 따른 자본 적립금 그리고 감가상각, 시설의 개보수 또는 교체, 그리고 자산 가치 감소에 대한 준비금 등을 제외한 적립금을 말합니다.
- “유급 상근 근로자”라 함은 통상 하루에 최소 6시간, 한 달에 최소 20일, 연중 12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유급 상근 근로자에는 출장 영업, 엔지니어링, 유지 보수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장의 감독을 받고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법인의 이사도 유급 상근 근로자에 해당되나, 이사회 참석만으로 급여를 받는 비상근 이사는 제외됩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정기적으로 급여 또는 수당을 받으며, 근로자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 EPF) 또는 여타 퇴직수당기금을 납부하는 근로자는 유급 상근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1.2 산업프로젝트의 승인 지침

말레이시아에서 산업 프로젝트의 승인 관련 정부의 지침은 다음의 기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근로자 일인당 자본 투자(Capital Investment Per Employee, CIPE)가 RM140,000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회사의 총 상근 인력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외주 근로자를 포함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은 현재의 정책에 저촉받으며, 또한

관리직, 기술직 및 감독직 직급(managerial, technical and supervisory, MTS)의 총 숫자가 전체 직원의 25% 이상이거나 또는 40% 이상의 부가 가치(VA)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생산 용량의 확대 및 제품의 다변화

제조업 허가를 받은 기업이 생산 시설을 확장하거나 추가 제품을 제조하여 제품 다변화를 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말레이시아 투자진흥청(MID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체 등록

2.1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방법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음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i. 개인이 운영하는 단독소유기업(sole proprietor). 또는
- ii. 2명 이상(단, 20명 이하)이 공동 소유주로서 운영하는 파트너회사. 또는
- iii. 유한책임파트너회사(LLP), 또는
- iv. 국내 설립 회사 또는 2016년 회사법(Companies Act, CA) 조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회사.

말레이시아의 모든 단독소유기업과 파트너회사는 1956년 사업등록법(Registration of Businesses Act 1956)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SSM)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파트너회사의 경우, 파트너들은 자산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채무와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트너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공식 파트너회사 증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할 수 있으나, 그게 꼭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2.1.1 회사 구조

말레이시아의 모든 회사는 2016년 회사법(CA)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법에서는 모든 회사들은 어떤 형태로든 사업활동을 영위하려면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65년 회사법(CA)에 따라 다음 세(3) 가지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 i. 유한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는 책임 사원의 책임은 만약 미지급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금액까지로 한정된다는 원칙 하에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 ii. 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에서 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 청산 시 회사의 자산에 기여하기로 보증한 금액까지로 한정됩니다.
- iii.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는 사원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원칙 하에 설립된 회사를 말합니다.

2.1.2 유한주식회사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 구조는 유한주식회사입니다. 유한주식회사로는 개인회사(회사 상호에 "Sendirian Berhad" 또는 "Sdn Bhd"로 기재) 또는 공개회사(회사 상호에 "Berhad" 또는 "Bhd"로 기재)가 있습니다.

주식 자본을 가진 회사는 설립한 후 다음의 경우에 개인회사의 형태로 변경하거나 또는 개인회사로 계속 남을 수 있습니다.

- i. 주식 양도권의 제한
- ii. 책임사원의 수를 50 명으로 제한. 단, 회사 또는 자회사에 고용된 종업원과 회사나 자회사의 전직 종업원은 제외합니다.
- iii. 일반인들에게 주식 및 회사채의 공모 금지.
- iv. 이자 유무를 불문하고 일반인들에게 일정 기간 경과 후 상환 청구에 즉시 응해야 하는 예탁금 공모 금지.

회사는 공개회사로 설립될 수 있으며, 또는 대안으로 개인회사로 설립된 회사도 1965년 회사법 41항에 따라 공개회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는 다음의 경우 주식을 일반인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 i. 설립 취지서(prospectus)를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에 등록했을 경우. 또는
- ii. 설립 취지서 1부를 주식 발행 당일 또는 그 이전에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했을 경우

2.2 회사 설립 절차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 MyCoID 2016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i. 회사의 상호명
- ii. 회사가 개인회사인지 공개회사인지 그 자격
- iii. 회사의 사업 성격
- iv. 등록된 주소
- v. 회사의 책임사원의 성명, 신원, 국적 및 보통의 거주지
- vi. 이사가 될 개인 모두의 성명, 신원, 국적 및 보통의 거주지
- vii. 주식에 의해 책임이 제한되는 유한주식회사의 경우, 책임사원이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의 세부 사항
- viii.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책임사원이 회사 청산 시 회사의 자산에 기여하겠다고 보증한 최대 금액

주식에 의해 책임이 한정되는 유한주식회사의 경우 RM1,000 또는 보증에 의해 책임이 한정되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RM3,000의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단 제공한 정보에 대해 말레이시아 기업등록소(Registrar)가 만족할 경우, 등록 통지서가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송달됩니다. 이 통지서는 등록 관련 요건과 그리고 등록에 선행하고 부수하는 문제가 준수되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회사의 설립 -고객 현장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는 모든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신청서에 대해서는 다음 기간 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승인 및 등록할 것을 약속합니다.

활동	기간
회사 등록	
회사 설립	1 일
회사 지위의 변경	1 일
회사 상호 변경	1 일
공개회사 영업 개시	1 일
담보 등록	2 일
신탁증서 승인	5 일
설립취지서 등록	3 일
회사 문서의 미인증 사본	30 분
회사 문서의 인증 사본	1 시간

* 회사 상호의 승인 신청은 회사 설립 없이도 가능합니다.

** 처리 기간은 대금 접수 순간부터 기산하여 해당 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로 계산합니다.

2.2.1 국내 설립 법인의 요건

회사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그곳에 회사법(CA)의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장부와 문서가 보관되어야 합니다. 회사 인감과 공식 문서, 출간물 및 (만약 있을 경우) 웹사이트에 회사 번호와 함께 회사 상호가 읽을 수 있는 로마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는 자사주를 거래하거나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자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결의에 대해 거수로 투표할 권리를 가집니다. 투표의 경우 회사의 주식 1주는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회사의 간사(secretary)는 성년의 자연인으로 주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야 합니다. 그는 지정된 단체의 회원이거나 또는 기업등록소(Registrar of Companies)의 허가를 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승인된 회사 감사를 말레이시아의 회사 감사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개인 기업은 적어도 1명의 이사가 있어야 하고, 반면에 공개회사는 적어도 2명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최소 수의 이사들은 각각 주 거주지 또는 유일한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사의 최소 나이는 18세이며, 2016년 회사법(CA)에서는 최대 나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이사는 반드시 회사의 주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2.3 외국 회사의 등록

외국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 방식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 i. 현지 회사의 설립 또는
- ii. 말레이시아에 지점 등록

외국 회사는 2016년 회사법(CA)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i. 말레이시아 국외에서 설립된 회사, 법인, 협회, 조합 또는 기타 단체. 또는
- ii. 본국법상 비법인 협회, 조합 또는 기타 단체로서 당해 단체 또는 조합의 간사(secretary) 또는 이를 위해 적법하게 선임된 다른 임원 명의로 고소하거나 피소되거나 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또한 말레이시아 내에 본사나 주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체.

2.3.1 등록 절차

- i. 신청인은 먼저 회사 상호 검색을 통해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 상호가 사용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 회사를 등록하기 위해 사용할 회사 상호는 본국에 등록된 회사 상호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회사 상호 예약을 위한 신청서는 MyCoID 2016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 회사 상호 1개당 RM50과 함께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로부터 승인받은 회사 상호는 승인 일자로부터 30일 간 유효합니다.

- ii. 승인을 받자마다 신청인은 승인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 다음의 등록 서류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a. 2016년 회사법(CA) 562(1)절 에 따른 외국 회사 등록 신청서
 - b. 외국 회사의 설립 증명서 또는 등록 증명서 인증 사본 1부

- c. 외국 회사의 헌장, 규약 또는 정관, 부속 정관 또는 헌장을 정의하는 기타 법률 문서의 등본 1부
- d. 만약 외국 회사의 현지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이사일 경우, 외국 회사가 직접 또는 외국 회사의 대리인을 통해 그 이사의 권한을 기재한 서면을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개인(대리인)으로 하여금 외국 회사를 대리하여 그러한 외국 회사에 전달할 필요가 있는 통지를 수락할 수 있도록 인가하는 선임 각서 또는 위임장
- f. 외국 회사의 회사 상호 예약 신청서 사본과 회사 상호를 승인하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서 수신한 이메일 사본으로 구성되는 추가 문서

유의사항: 상기 등록 문서 중 말레이시아어(Bahasa Malaysia)나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서가 있는 경우, 당해 문서의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의 공증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iii. 등록 수수료는 다음의 요율표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RM)	수수료 금액 (RM)
1,000,000 이하	5,000
1,000,001 – 10,000,000	20,000
10,000,001 – 50,000,000	40,000
50,000,001 - 100,000,000	60,000
100,000,001 이상	70,000

등록 수수료 산정 시에는 먼저 외국 회사의 자본금을 당시의 환율로 말레이시아 링깃화(RM)로 환산하여야 합니다.

외국 회사의 자본금이 없을 경우에는 정액으로 RM70,000을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iv. 등록 절차를 준수하고 적법하게 작성한 등록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즉시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로부터 등록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v. 승인을 받자마자 회사나 회사 대리인은 2016년 회사법(CA)을 반드시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명세나 회사 상호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변경 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사항을 적정 수수료와 함께 SSM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회사의 자본금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 사항 발생 후 14일 이내 SSM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회사는 적절한 회계 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1년에 한번 회사 등록 일자 기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간 수익을 SSM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외국인의 경우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변호사, 회계사 또는 전문직 회사 간사의 서비스를 받아 볼 것을 권장합니다.

2.4 유한책임파트너회사(LLP)의 구조

2.4.1 LLP의 특징

LLP는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인 파트너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습니다. 다른 법인과 마찬가지로 LLP는 영속계승권(perpetual succession)을 가집니다. 파트너의 변동이 있더라도 LLP의 존립, 권리나 책임은 영향받지 않습니다. LLP는 규모의 제한이 없으며 또한 고소하거나 피고소될 수도 있으며, 재산을 취득, 소유, 보유 및 개발 또는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겪을 수 있듯이, LLP는 그와 같은 여타 행위와 일을 할 수도 있고 겪을 수도 있습니다. LLP는 회사의 설립, 유지관리 및 소멸의 관점에서 간단하고 유연한 절차를 제공할 일종의 사업용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LLP의 설립 및 LLP로의 전환에 필요한 등록 수수료는 RM500입니다. 회사 상호 예약 신청 수수료는 RM30입니다.

2.4.2 LLP는 누가 설립할 수 있나요?

LLP는 LLP 합의 조건에 따라 이윤 목적의 합법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최소 2인 이상의 개인(전부 또는 일부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LLP는 반드시 동일 직종의 자연인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또한 말레이시아 기업 등록소(Registrar)의 승인을 받은 효력있는 전문직 배상책임 보험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LLP는 다음의 형태로 설립될 수 있습니다.

- i. 스타트업(신생기업), 또는
- ii. 중소기업, 또는

- iii. 전문직 회사, 또는
- iv. 합작회사, 또는
- v. 벤처캐피털.

2.4.3 등록 절차

LLP를 등록하려면, 신청자는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i. 등록하고자 하는 LLP 상호명
- ii. 업종
- iii. 등록된 사무소의 주소
- iv. 파트너의 성명과 세부 인적 사항
- v. 준법감시인의 성명과 세부 인적 사항
- vi. 승인서(전문직 회사의 경우)

등록 신청 시 등록 수수료 RM500을 납부해야 합니다. LLP 등록 신청 요건 충족 시 말레이시아 기업등록소(Registrar)는 LLP를 등록시켜 주고 당해 LLP에 등록 번호와 함께 등록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등록 통지서는 당해 LLP가 등록되었음을 알리는 결정적 증빙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당해 LLP의 사업 관련 기타 법규정이 충족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LLP의 회사 상호는 “Perkongsian Liabiliti Terhad” 또는 그 약어인 “PLT”로 끝나야 합니다.

2.4.4 LLP로의 전환

신규 등록과는 별개로, 기존의 사업체도 LLP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이 허용되는 사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1956년 사업등록법(Registration of Businesses Act)에 따라 등록된 전통적 파트너회사 또는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개인에 의해 설립된 여타 파트너회사. 또는
- ii. 2016년 회사법(CA) 또는 여타 이전의 상응하는 법에 따라 설립된 개인 회사.

전통적 파트너회사가 LLP로 전환하기 위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동일한 파트너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 ii. 신청 일자에 전통적 파트너회사가 자체 부채를 정산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 iii. 전문직 사업의 경우에는 정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승인서.

개인 회사가 LLP로 전환하기 위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동일한 파트너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ii. 회사의 자산에 담보권 설정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 iii. 신청일자에 개인 회사는 지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iv. 정부 기관에 납부해야 할 모든 미납 법정 수수료는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v. 널리 배포되는 일간 신문과 관보(Gazette)에 LLP로의 전환 사실을 알리는 광고 게재를 완료해야 합니다.
- vi. 모든 채권자가 LLP로의 전환에 동의했어야 합니다.

LLP로의 전환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i. 당해 전통적인 파트너회사 또는 개인회사의 자산, 권리, 특권, 의무 및 책임이 LLP에 귀속됩니다.
- ii. 계류 중인 소송은 LLP를 제소 또는 피소 당사자로 하여 계속 진행되고, 완료되며, 집행될 수 있습니다.
- iii. LLP로 전환된 이후에는 당해 LLP가 당사자가 되어 기존의 합의, 계약은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 iv. 전통적인 파트너회사가 LLP로 전환된 경우, 전환 이전에 발생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 파트너들이 계속 개인적인 책임(LLP와 함께 또는 여러 명과)을 져야 합니다.
- v. 개인회사가 LLP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 이전에 발생한 의무와 책임에 대해 LLP가 계속 책임을 져야 합니다.

2.4.5 LLP의 요건

LLP는 2016년 회사법(CA)에 따라 간사로 활동할 자격이 있는 파트너 또는 개인 중에서 1인 이상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준법감시인은 말레이시아 국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하며 평소 말레이시아에 거주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거나 또는 1965년 회사법(CA)에 따라 이사나 간사로 활동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준법감시인으로 활동할 자격이 없습니다.

LLP는 우편물과 통지서의 수발인이 가능하도록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사무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LLP는 이 회사법에 따라 발급된 등록 통지서, LLP 합의서 사본, 각 파트너와 준법감시인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 명부, 최신 연례 보고서와 담보권 설정 법률 문서가 있는 경우 당해 법률 문서 사본 등을 등록된 사무소에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LLP는 당해 LLP의 재무 상태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보여 줄 수 있도록 회계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LLP 합의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감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2.5 E-서비스

E-서비스는 SSM(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과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방식, 즉 창구 서비스의 대안으로 도입되었습니다. E-서비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고(MyCoID 서비스) 또한 법인 및 사업체 정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e-Info와 MyData를 통해 법인과 사업체 정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결제는 신용 카드, 계좌 자동이체, 선불 계좌로 할 수 있습니다.

1회 제출로 일단 SSM에 회사 설립이 등록되면, MyCoID를 이용하여 근로자공제기금(EPF), 말레이시아 국세청(IRBM), 사회보장기구(SOSCO), 중소기업개발공사(SME Corp) 및 인적자원개발기금(HRDF)에 동시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SSM 웹사이트 www.ssm.com.my 또는 www.ssm-einfo.com.my 또는 www.mydata-ssm.com.my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지분 정책에 관한 지침

3.1 제조 부문의 지분 정책

말레이시아는 항상 제조 부문 투자를 환영해 왔습니다. 현지 인인의 제조 부문 참여 증대를 원하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말레이시아인과 외국인 투자자 간의 합작 투자를 장려합니다.

신규, 확장 또는 다변화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정책

2003년 6월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수출액 규모에 관계 없이 그리고 제품이나 활동의 예외 없이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투자는 물론, 기존 회사의 확장/다변화 프로젝트 관련 투자에서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 정책은 다음에도 적용됩니다.

- i. 전에 제조업 허가 취득을 면제받은 회사 중 현재 자본금이 RM250만에 달하거나 또는 현재 고용하고 있는 상근 근로자 수가 75명 이상이 되어 제조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회사.

- ii. 전에 지분 제한 조건을 면제받고 허가를 득한 기존의 회사로서 지금은 자본금이 RM250만에 달해 지분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회사.

기존의 회사에 적용되는 지분 정책

2003년 6월 17일 이전에 회사에 부과된 지분 및 수출 조건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 조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승인 여부는 각 사안별로 공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3.2 외국 투자의 보호

안전한 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는 말레이시아의 약속으로 40개가 넘는 국가로부터 8,000개가 넘는 회사가 말레이시아를 그들의 역외 기지로 두어 왔습니다.

지분 소유권

지분 참여를 승인받은 회사는 원래의 승인 조건을 계속 준수하고 당해 프로젝트의 원래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지분 참여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보장협정

말레이시아 정부가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Guarantee Agreements, IGA)을 기꺼이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바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IGA는 다음의 일을 합니다.

- 국유화 및 수용으로부터의 보호
- 국유화 또는 수용의 경우 즉각적이고 적절한 보상의 보장
- 이윤, 자본 및 기타 수수료의 자유로운 이전의 제공
- 투자 분쟁 시 말레이시아가 1966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투자분쟁해결협약(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따른 해결의 보장

말레이시아는 도움이 되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투자보장협정(IGA)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IGA에 서명하고 효력이 있는 목록

국가			
1. 미국*	17. 한국	33. 요르단	49. 북한
2. 독일	18. 중국	34. 방글라데시	50. 예멘
3. 캐나다 *	19. 아랍에미리트(UAE)	35. 크로아티아	51. 터키
4. 네델란드	20. 덴마크	36. 스페인	52. 레바논
5. 프랑스	21. 베트남	37. 몽골	53. 부르키나 파소
6. 스위스	22. 칠레공화국	38. 인도 ****	54. 수단공화국
7. 스웨덴	23. 타이완	39. 우루구아이	55. 에티오피아공화국
8. 벨기에-룩셈부르크	24. 헝가리	40. 페루	56. 세네갈
9. 영국	25. 폴란드	41. 카자흐스탄	57. 바레인
10. 스리랑카	26. 인도네시아 ***	42. 체코공화국	58. 알제리아
11. 루마니아	27. 알바니아	43. 기니	59. 사우디아라비아
12. 오스트리아	28. 짐바브웨	44. 가나	60. 모로코
13. 핀란드	29. 투르크메니스탄	45. 이집트	61. 이란
14. 쿠웨이트	30. 나미비아	46. 쿠바	62. 시리아 아랍 공화국
15. 아세안 **	31. 캄보디아	47. 우즈베키스탄	63. 슬로바키아 공화국
16. 이태리	32. 아르헨티나	48. 마케도니아	64. 산마리노

투자분쟁해결협약

외국인 투자 촉진과 보호를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투자분쟁해결협약 조항을 1966년 비준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후원하에 설립된 것으로 워싱턴의 IBRD 본부 건물에 소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통해 국가 간의 투자 분쟁을 조정 및 중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국제중재센터(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AIAC)

(이전에는 쿠알라룸푸르 지역중재센터로 알려져 있었음)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는 정부 간 조직인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sian-African Legal Consultative Organization, AALCO)의 후원 하에 1978년 설립되었습니다.

아시아국제중재센터 (AIAC)

이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장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그리고 지역 내 무역, 통상 및 투자에 관여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분쟁 해결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으로부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계약의 위반, 종료 및 무효화로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란 또는 클레임은 쿠알라룸푸르 지역분쟁센터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 미국 & 캐나다 - 보험보장협약.

** 2012년 2월 아세안 포괄투자협정(ASEAN Comprehensive Investment Agreement, ACIA)의 발효로 종료됨.

*** 인도네시아가 2014년 6월 20일자로 종료를 통지해 옴에 따라 2015년 6월 20일자로부터 종료 효력이 발생됨.

**** 인도가 2016년 3월 23일자로 종료를 통지해 옴에 따라 2017년 3월 23일자로부터 종료 효력이 발생됨.